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12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03월 03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03. 03.~03. 17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이용대	1981. 12. 05.	0178200274100001631	₩10,620,000	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3길
2	조영래	1987. 08. 31.	0178200274100007581	₩17,790,000	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3길
3	조영래	1987. 08. 31.	0178210274100004763	₩7,725,000	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3길
4	백상현	1974. 12. 19.	0178210274100004672	₩3,862,500	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로26길
5	㈜더제이니	134511-0156***	0178200274100001630	₩11,947,500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로
6	㈜아이백스인베스트	110111-6862***	0178210274100004762	₩18,540,00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
7	㈜바른나무	110111-6883***	0178210274100004765	₩3,862,50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
8	㈜클립보드	110111-6837***	0178210274100004775	₩3,090,000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
9	주식회사 라이언블름파트너스	110111-7392***	0178210274100001093	₩18,540,000	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
10	한아름	1979. 10. 07.	0178200274100002354	₩2,132,100	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37번가길
11	신성인	1969. 01. 10.	0178210274100004764	₩7,725,000	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7길
12	이종성	1991. 12. 31.	0178220274100000391	₩1,500,000	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22길
13	이영근	1952. 03. 07.	0178200274100006407	₩31,860,000	강원도 춘천시 전원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4	공태원	1964. 02. 25.	0178200274100005140	₩9,558,000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 3길
15	김수원	1962. 09. 10.	0178200274100005476	₩9,558,000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
16	김수원	1962. 09. 10.	0178200274100005411	₩24,810,000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
17	김수원	1962. 09. 10.	0178200274100004347	₩21,030,000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
18	(주)트리컴퍼니	110111-7293***	0178210274100004710	₩7,725,000	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
19	최강민	1990. 02. 17.	0178220274100000395	₩3,750,000	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54번길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

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, ☎ 02-6735-8139, 8141, 8142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